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허민숙

-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위치추적을 통한 '기술매개 학대'가 치명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 ✓ 현행 법체계는 피해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행위를 명확한 스토킹 유형으로 규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한계가 있음
- ✓ GPS 추적 행위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만 처리되는 현재의 법 구조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발동을 지연함
- ✓ 위치추적 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립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이를 '살인 예고'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추적, 구금으로 전환하는 영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음



The Legal Void in Addressing GPS-Based Stalking :Lessons from the Namyangju Murder Case



I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법적 공백이 있다!

가. 검토 배경

2026년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44세)이 20대 피해 여성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전동드릴로 파손한 뒤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특히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사건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이용하는 행위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하게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이러한 행위가 고위험 신호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적시에 인식·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해당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중심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발동을 제약하는지 여부이다.

현행 법체계는 GPS 위치추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음으로써, 법 적용이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조치 발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공백의 구조를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와 대응 실태

가해자와 공범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피해 여성 차량에 3개, 피해자 어머니 차량에 1개, 피해자 지인 차량에 1개 등 총 5개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²⁾ 2026년 4월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에 가담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위치정보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공범들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이 병행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서 공개된 고위험 분류 기준(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발찌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에는 위치추적장치 무단 부착 행위가 독립적 위험 지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³⁾

1) 뉴스1 양희문(2026.3.20.). 「전동드릴로 차창 깨고 살해했는데…김훈 "피해자와 얘기하려 접근"」, <<https://v.daum.net/v/20260320114724972>>(검색일: 2026.5.28.).

2) 중앙일보 박종서(2026.4.30.). 「위치추적기 5개 달고 '일상 추적'…스토킹 살인 김훈 공범 3명 검찰 송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4940>>(검색일: 2026.5.5.).

3) 시사저널 박선우(2026.3.20.).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칼 뽑은 경찰…'폭력신고 3회 이상'은 유치·구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53>>(검색일: 2026.5.5.).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총 6차례의 신고를 했다. 2025년 5월 11월의 가정폭력 신고가 1차 신고로, 이 신고에 의해 가해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후 2026년 1월에는 결별 이후 불안감에 대한 2차 신고(2026.1.22.)가 있었고, 6일 후 제3차 신고(2026.1.28.)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발견되었다고 신고한다. 동거남이자 가정폭력 가해자, 그리고 스토킹 피의자인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등을 위한 상담 및 방문 이후 제6차 신고(2026.2.21.)에서 재차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장치에 대해 신고하고, 2월 26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1월 신고 당시 수거된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 차량에서 위치추적장치가 최초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서야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착수한 셈이다.⁴⁾

이처럼 경찰의 느리고도 안이한 대응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면서까지 피해자의 행적을 쫓고자 하는 가해자의 위험성을 간파하지도, 사전에 차단하지도 못함으로써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막지 못하였다.

II

친밀관계폭력에서 위치추적행위가 갖는 위험성

가. ‘기술매개 학대’의 이해

친밀관계폭력 범죄에서의 GPS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기술매개 학대’(Technology-Facilitated Abuse, TFA)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매개 학대란 친밀관계폭력 범죄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이 피해자에 대한 감시, 통제, 강압, 위협 및 위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행위 또는 그 반복적 패턴을 의미한다. TFA는 소셜미디어·메신저·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 감시 앱, 스파이웨어, 계정 침해, CCTV·비디오카메라, 스마트홈 기기 등 일상적 기술의 오·남용을 통해서도 수행된다.⁵⁾

Rogers 등(2023)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6개국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22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기술을 이용한 학대(TFA)와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폭력 연속체(continuum of violence)’ 안에서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⁶⁾ 다시 말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감시·통제·괴롭힘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폭력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4)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 제공.

5) Rogers, Michaela M. et al., “Technology-Facilitate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coping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4(4), 2023, p.2210.

6) 같은 글, 2023, p.2221.

기술매개 학대는 디지털 기술이 감시·통제·위협 수단으로 전환된 폭력 양식이다.

따라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을 이용한 위치추적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분리 이후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스토킹 수단이며, 스토킹은 전 연인 살인과 강한 관련성을 보여 위험평가에서 핵심 지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 GPS 위치추적 스토킹 국내·외 실태

“실시간 감시는 피해자 은신과 탈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한다.”

영국 Refuge(영국 최대 규모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아동 지원 단체)의 ‘기술매개 학대 및 경제적 역량 강화팀(TFAEE)’ 상담 데이터는 기술매개 학대의 급증을 입증한다. 2017년 기술 학대 전담 팀 신설 이후 2024년까지 상담 건수가 초창기 대비 207% 폭증했다.⁷⁾ 2025년 첫 9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추가 증가해 829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전체 건수 (512건) 를 이미 초과한 수치로 기술 학대의 급속한 확산을 명확히 시사한다.⁸⁾

한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범죄 위원회 조사 결과, 1년의 기간 동안 위치추적장치 구입 고객의 25%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고,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이 추적 장치 불법 사용으로 기소한 범죄자의 82%가 가정폭력 범죄자였다.⁹⁾ 이러한 수치는 GPS 추적이 독립적 범죄행위를 넘어 친밀관계폭력에서 자행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패턴의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기술 매개 젠더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GPS 장치나 위치추적 앱을 통해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의 위치를 강제로 확인당한 피해 경험은 21.0%에 달했다. 이는 기술이 젠더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기술매개 스토킹 피해 현황

구분	비율
GPS 장치,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나 또는 나의 동거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	21%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4, p.162.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면담 조사에서도 GPS와 같은 기술을 매개로 한 스토킹 사례가 보고되었음은 물론이다.

7) Refuge, 「Refuge calls for tech-facilitated abuse to be a priority in government VAWG strategy」, <<https://refuge.org.uk/news/refuge-calls-for-tech-facilitated-abuse-to-be-a-priority-in-government-vawg-strategy-following-the-charitys-inaugural-tech-safety-summit/>>(검색일: 2026.6.11.).

8) Refuge, 「Refuge reveals rise in tech abuse including spycam surveillance ahead of UN'S 16 Days of Activism」, <<https://refuge.org.uk/news/refuge-reveals-rise-in-tech-abuse-including-spycam-surveillance-ahead-of-uns-16-days-of-activism/>>(검색일: 2026.6.11.).

9) New South Wales Crime Commission, 『Project Hakea: Criminal use of tracking and other surveillance devices in NSW』, 2024, p.16, 26.

피해 사례 1

직장생활 중 만나던 남성 가해자에게 결별을 선언한 이후 스토킹을 당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놓고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미행하였다.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상당한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적이 있다고 한다. 직장의 위치를 알고 있는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가해자를 따돌릴 수는 없었다고 한다.

자료: 한민경 외,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3, p.95.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다. <피해 사례 2>는 교제 기간 중 설치된 위치추적기가 이별 이후 스토킹의 도구로 전환된 경우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통제가 관계 종료 후에도 기술을 매개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사례 2

상담을 마치고 내려오니깐 가해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란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위치추적기를 미리 달아둔 거예요, 교제했을 때. 교제했을 때에도 물론 이 사람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별 후에 그게 스토킹의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미행을 했다고 피해자도 생각하고 경찰이나 저희도 ‘그러면 미행했나보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하다 보니 위치추적기가 발견돼서 추가로 범죄를 접수한 경우도 있어요.

자료: 김보화, 『서울시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5, p.164.

다. GPS 위치추적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살해의 밀접한 연계

친밀관계 범죄 연구는 결별 직후를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살해 위험에 가장 극도로 노출되는 구간으로 일관되게 지목한다. 영국에서 조사된 358건의 여성 살해 사건 중 무려 94%에서 피해자가 살해 전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통계¹⁰⁾는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치명적 폭력의 전조 신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GPS 위치추적은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기능한다.¹¹⁾ GPS 추적은 독립적인 단일 행위가 아니라 기술을 매개로 한 강압적 통제 패턴의 핵심 수단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피해자가 시도하는 은신, 이주,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탈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살인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따라서 결별 이후 가해자가 GPS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추적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경고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치추적이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탈출 경로를 실시간으로 봉쇄하며 치명적 폭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이고 긴박한 위험 징후다.

¹⁰⁾ Smith, Monckton, J. et a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ing and Homicide, 2017. 이 중 71%가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관계였다.

¹¹⁾ ANROWS, National Risk Assessment Principles for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https://www.anrows.org.au/publication/national-risk-assessment-principles-for-domestic-and-family-violence/read-quick-reference-guide/>>(검색일: 2026.5.28.).

III

현행법상 GPS 부착행위의 규율 체계와 입법상 한계

가. 「스토킹처벌법」상 GPS 부착행위의 포섭 한계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접근·따라다니기·진로 차단, 주거 등에서의 기다림·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 물건의 도달 또는 부착, 물건 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제공·게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칭 등 7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바목¹²⁾은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율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GPS, 스마트태그, 위치추적 앱)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추적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유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를 보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켜보는 행위' 또는 라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포섭되어 처벌된 바 있다.¹³⁾ 즉 현행법상 전혀 규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위치추적 자체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나. 「가정폭력처벌법」의 스토킹 미포섭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는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특정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열거 목록에 GPS 추적과 같은 스토킹 행위는 포섭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2018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김종선(당시 48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당시 47세)를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혼한 뒤 4년이 넘도록 전 배우자의 끊임없는 살해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개명까지 하고 연락처와 주거 장소를 자주 바꾸었다. 그러나 김종선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차에 GPS 탐지 장치를 몰래 붙여 놓거나 흥신소 등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피해자를 추적하였다.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한 뒤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김씨가 그때마다 집요하게 쫓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김종선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내어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잠복한 뒤, 피해자가 운동을 위해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였다.¹⁴⁾

“위치추적행위는 치명적 폭력과 연결되어 있으나 법적 규율은 아직 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2)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뉴시스(2022.5.7.), 「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장치 달고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507_0001862251>(검색일: 2026.6.10.).

14) 한겨레(2019.6.14.),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2심서도 징역 30년」, <<https://www.hani.co.kr/arti/>>

이처럼 GPS 위치추적이 살인의 직접적 수단으로 활용된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토킹처벌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위치추적장치 설치·이용 행위를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포섭하는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치정보법」에 의한 보충적 처벌의 구조적 한계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¹⁵⁾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GPS 부착행위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만 처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스토킹의 맥락과 위험성이 법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보호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추적하며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스토킹의 본질적 불법성을 포섭할 수 없다. 즉,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로 축소 평가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을 지배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강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법적 판단에서 탈락하게 된다.

둘째,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현접근금지 등)나 검사의 잠정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GPS 추적 행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만 처리하면 스토킹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해자는 이러한 즉각적·예방적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가해자의 위험도 평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위치정보법」 위반은 일반 형사 전과로 처리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스토킹 행위 금지 보호명령 등 스토킹 특유의 재범 방지 수단을 부과할 수 없다. 가해자로서는 GPS 추적을 반복하더라도 스토킹 전과가 누적되지 않아, 향후 동종 사건에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허점이 발생한다.

society/society_general/897933.html)(검색일: 2026.6.3.).

15)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위치정보법은 추적의 위
법성은 드러내지만, 스
토킹의 위험성은 담아내
지 못한다.

IV

해외의 GPS 위치추적 활용 스토킹 대응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의 연방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2022년 재인증을 통해 ‘기술매개 학대(technological abuse)’를 34 U.S.C. § 12291(a)(40)에 독립 개념으로 신설하고, 위치추적장치를 포함한 각종 기술의 악용을 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의 맥락에서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스토킹 구성요건 자체에 GPS를 열거한 방식이 아니라, 기술 활용 피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들을 통해 수사 기소 및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장한 것이다.¹⁶⁾

주법 역시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 SB 1168(2025년 5월 서명, 동년 10월 1일 시행)은 플로리다 법률 제934.425조를 개정하여 GPS 트래커, 에어태그¹⁷⁾, 스마트태그¹⁸⁾, 추적앱 등을 살인·납치·성폭행·가정폭력·스토킹 등 동조에 열거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조하는 과정에서 추적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를 3급 중범죄(최대 5년 구금·\$5,000 벌금)에서 2급 중범죄(최대 15년 구금·\$10,000 벌금)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¹⁹⁾ 이는 2022년 미국에서 에어태그를 이용한 피해자 추적·살해 사건이 복수 보고된 데 대응한 입법으로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나.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24년 12월 1일 「가정 및 개인 폭력 범죄법(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Crimes Act 2007)」개정을 통해 스토킹 정의에 “기술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활동·통신·이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²⁰⁾ 이 개정의 핵심은 직접 접촉이나 물리적 접근 없이도 GPS 추적기·스파이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추적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명문화한 점에 있다. 이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기술을 매개로 한 지속적 감시가 스토킹 피해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접근금지명령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열리게 되었다.

“해외 입법례는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추적행위를 별도의 법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16) Cornell Law School, 「34 U.S. Code § 12291 – Definitions and grant provision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4/12291>>(검색일: 2026.6.3.).

17) 애플 기기의 '나의 찾기(Find My)'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치 추적기를 말한다. 상대방의 가방이나 차량에 태그를 넣어두면 공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8) 삼성 갤럭시 기기의 'SmartThings Find'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치 추적기를 말한다.

19) The Florida Legislature, 「934.425 Installation or use of tracking devices or tracking applications; exceptions; penalties」, <https://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900-0999/0934/Sections/0934.425.html>(검색일: 2026.6.3.).

20) Austral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 SECT 8 Meaning of "stalking"」,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legis/nsw/consol_act/capva2007347/s8.html>(검색일: 2026.6.3.).



GPS 위치추적 스토킹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GPS 부착행위의 명시적 포섭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의 행위유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규정 방식은 특정 기술명만을 나열하기보다 GPS 추적기, 스마트태그, 블루투스 기반 추적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 기능적으로 동등한 수단을 포괄하는 기술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사전동의 없는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 위치공유와 부모-자녀 간 안전확인, 고령 가족 보호를 위한 일상적 위치 확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은 위치추적장치 발견 자체를 스토킹 위험의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필요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위험평가에서 전자적 추적행위를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나. 추가 검토 사항

1)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 범죄 포섭 및 조치 연동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결별 이후에도 통제와 지배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통제 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격리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신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과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 내 고위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동선 통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스토킹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 보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접근금지 위반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

법」상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거·격리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두 법률 간 보호수단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3) 잠정조치 위반 시 자동 상향 조치 규정 신설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지만, 사후 형사제재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그 자체를 고위험 신호로 간주하여 법원이 더 강력한 보호조치(상위 단계 조치)로, 사후 형사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 통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폭력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피해자에 대한 통제 욕구가 극단에 달한 “고위험 치명성 지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라는 사후적 형사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 변경 절차를 통해 24시간 동선 감시가 가능한 GPS 전자장치 부착을 즉각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상향 조치를 취하고 있다.²¹⁾

표 2 스토킹 및 가정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 위치추적 행위 명시적 포섭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	• 위치추적장치 발견 자체를 위험신호로 평가할 수 있어 잠정조치 발동 근거가 명확해짐 • 정당한 위치공유와 불법 추적의 경계 명확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포섭 •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명시적으로 추가	•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통제와 「가정폭력처벌법」상 격리조치를 연계할 수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조항 신설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 통제하고, 스토킹법과의 보호수단 불균형을 해소
잠정·임시조치	• 위반 시 법원이 상위 단계 조치(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를 즉시 심사하도록 규정	• 반복 위반 등 고위험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한 대응이 가능해짐

21) Government of UK, 「Domestic Abuse Act 20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17/part/3>>(검색일: 2026.6.12.); College of Policing, 『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s: Police making an application at court』, 2024.

REPORT·LIST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422호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	2026.06.25.	류경아
제421호	프랑스 핵전력 강화 정책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유럽 갈등과 유럽의 안보 전략 변화	2026.06.18.	심성은
제420호	18년간 방치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분 실효성 없어 타 범죄 영역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진단과 개선 과제	2026.06.18.	백지연·김혜미
제419호	지방선거, 계속 이렇게 치러도 되나? 인구편차, 선거구 확정, 무투표 당선 등을 중심으로	2026.06.02.	송진미
제418호	식품기부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지역간 식품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품기부법」 개정을 중심으로	2026.06.02.	정용제
제417호	2026년 중국 양회(兩會)와 우리의 대응전략	2026.05.31.	김예경
제41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태양광·풍력·ESS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제도개선 방향	2026.05.18.	김경민
제415호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 전입제한이 만든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입법 과제	2026.04.21.	허민숙
제414호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규정의 현황과 쟁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미와 평가	2026.04.14.	허석재
제413호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미국·프랑스·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26.04.14.	정용제
제412호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주요 5개국의 의사인력 지역배치의 입지규제 및 유인정책 비교 분석	2026.04.13.	김은정
제411호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2026.04.13.	이수진
제410호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2026.04.12.	하혜영
제409호	FACT CHEC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	2026.04.06.	유재국·김진수·박재영
제4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의 역할과 정책과제	2026.04.06.	장영진
제407호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가격 이슈를 넘어 건강과 인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생리대 문제	2026.04.02.	허민숙·한진옥
제406호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과와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2026.04.01.	김경민
제405호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 방안 OECD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도입 쟁점 및 시사점	2026.04.01.	김현아·송진미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남양주 스톡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톡킹'의 법적 공백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자 |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과 입법조사관
02-6788-3538 minsheo@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60-002277-14
ISSN 2586-565X